

건설업관리규정(국토교통부 예규)

<목 차>

1. 제재처분 의제사유 마련 –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을 도과한 후 시정명령을 받기 전에 그 위반事實을 해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제재처분을 받은 것으로 봄

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|
|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| 소관부처 | 국토교통부 | 작성자 | 이름 | 김학원 |
| | 담당부서 (과) | 건설산업과 | | 직급 | 행정사무관 |
| | 국장 | 정경훈 | | 연락처 | 044-201-3509 |
| | 과장 | 박병석 | | 이메일 | khmj4@korea.kr |
| | | | | | |

정책책임자직위

건설정책국장

성명(서명)

정경훈 *Zomn*

< 규제 개요 >

| | | | |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|---|
| 기본 정보 | 1. 규제 사무명 | 제재처분 의제사유 마련 -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을 도과한 후 시정명령을 받기 전에 그 위반事實을 해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제재처분을 받은 것으로 봄 | | |
| | 2. 규제 조문 | <input type="radio"/> 건설업관리규정 제7장. 3.본문 | | |
| | 3. 위임법령 | <input type="radio"/>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| | |
| | 4. 유형 | 신설 | 5. 입법예고 | <input type="radio"/> 재 행정예고 계획 (12.5~12.26) |
| 규제의 필요성 | 6. 추진 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| <input type="radio"/>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을 도과한 후 시정명령을 받기 전에 그 위반事實을 해소한 경우에도 제재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게 하여 처분실효성 확보 필요(최근 2년 이내 동일업종에서 같은 위반 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 가능) * 감사원감사 지적사항('18.3) | | |
| | 7. 규제 내용 | <input type="radio"/> 제재처분 의제사유 마련 -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을 도과한 후 시정명령을 받기 전에 그 위반 사실을 해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제재처분을 받은 것으로 봄. *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본문에서는 '국토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1.시정을 명하거나, 2.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, '그 밖의 필요한 지시'에 대해 의제처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별도의 규제로 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됨. | | |
| | 8. 피 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| <input type="radio"/>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의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를 한 건설업자 | | |
| | 9. 규제 목표 | <input type="radio"/>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을 도과한 후 시정명령을 받기 전에 그 위반事實을 해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제재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게 하여, 2년 이내에 동일업종 같은 위반행위 발생시 영업정지 처분 토록 하여 실효성 확보 | | |
| 규제의 적정성 | 10. 영향 평가 여부 | 기술영향평가 | 중기영향평가 | 경쟁영향평가 |
| | | 해당없음 | 해당없음 | 해당없음 |
| 기타 | 11. 비용편익 분석 (정성분석) | <input type="radio"/> 적용제외(제7호) | | |
| | 12. 일몰 설정 여부 | 해당없음 | | |
| | 13. 원칙 허용· 예외 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| 해당없음 | | |

〈조문 대비표〉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제7장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| 제7장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|
| <p>3.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(과징금)부과 적용기준</p> <p>법 제81조제4호·제6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재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최근 2년 이내 동일업종에서 같은 위반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8호·제9호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. 다만,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은 곧바로 법 제82조제1항제8호·제9호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.</p> | <p>3.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(과징금)부과 적용기준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 경우(시정명령을 받기 전에 그 위반 사실을 해소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|

I.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

1.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

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을 도과한 후 시정명령을 받기 전에 그 위반 사실을 해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제재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게 하여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 필요 [감사원감사 수감결과('18.3) 반영]

※ 최근 2년 이내 동일업종에서 같은 위반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 가능(건설업 관리규정 제7장)

2.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

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

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(시정명령 등) 본문에서는 “국토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기간을 정하여 1.시정을 명하거나, 2.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수 있다.”라고 되어 있음.

- ‘시정명령을 받기 전에 그 위반사실을 해소한 사실이 있는 경우’에도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로 보게 하는 것임.

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

| 이해관계자명 | 주요 내용 | 조치결과 |
|---|---------|------|
|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되는 건설업자(시정명령 대상자) | 행정예고 예정 | |
| | | |
| | | |

3. 규제목표

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을 도과한 후 시정명령을 받기 전에 그 위반 사실을 해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제재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게 하여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

II. 규제의 적정성

1. 목적·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

- (목적)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을 도과한 후 시정명령을 받기 전에 그 위반사실을 해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제재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 필요
- (수단) 처분관청으로 하여금 위반사실을 해소한 경우에도 제재처분 이력을 관리도록 함
- (타당성) 목적 및 수단이 타당함

2.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

| 영향평가 | | |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| 일몰설정 여부 | 원칙허용· 예외금지 |
|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기술 | 경쟁 | 중기 | | | |
| 해당없음 | 해당없음 | 해당없음 | 해당없음 | 해당없음 | 해당없음 |

○ 영향평가

- 기술규제영향평가

기술규제 미포함(산업통상자원부 의견, '18.11.30)

- 경쟁영향평가

처분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경쟁과 관련이 없음

- 중기영향평가

처분기준에 관한 사항이므로 건설업자 전반(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음)에 걸치는 사항임

○ 기타 고려사항

- 시장유인적 규제설계

해당없음

- 국제 기준 정합성

해당없음

- 일몰설정 여부

2021.2.3.까지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음

- 원칙허용·예외금지 규제방식(네거티브 규제) 적용 여부
해당없음

3.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

- o 해외사례

해당없음

- o 타법사례

해당없음

III. 규제의 실효성

1. 규제의 순응도

-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

피규제자의 규제 준수와는 무관하게 처분관청이 관리하는 것임

- o 규제 차등화 방안

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이므로 차등화는 바람직하지 않음

2. 규제의 집행가능성

- o 행정적 집행가능성

제재처분을 받은 것으로 이력을 관리하는 사항이므로 행정적 집행가능성이 높음

- o 재정적 집행가능성

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아님

IV.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

1. 추진 경과

- 감사원 감사결과(2018.3)를 반영하는 사항임
- 2018.12월 중 행정예고 계획

2. 향후 평가계획

처분관청에 세부처리방안을 알리고,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모니터링할 계획

3. 종합결론

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을 도과한 후 시정명령을 받기 전에 그 위반 사실을 해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제재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여 제재처분의 실효성 확보 필요

별 첨**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****가. 대안별 분석 비교표**

| 분석기준년도 | 규제시행년도 | 분석대상기간 (년) | 할인율(%) | 단위 |
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|
| | | | | 백만원, 현재가치 |

규제대안1 :

| 영향집단 | 비용 | 편익 | 순비용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|
| 피규제 기업 · 소상공인 | 직접 간접 | | |
| 피규제 일반국민 | | | |
| 피규제자 이외 기업 · 소상공인 | | | |
|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| | | |
| 정부 | | | |
| 총 합계 | | | |
| 기업순비용 | | 연간균등순비용 | |

나.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·편익 분석 결과

<규제대안1 : >